



시 보

시보는 공문시행에 대체하는 효력을 갖습니다.

www.namwon.go.kr

선 람	기관장

제113호 2015. 11. 16(월)

공 고

○ 남원시 공고 제 2015 - 1387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고 시

○ 남원시 고시 제 2015 - 90 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12

회 람										
----------------	--	--	--	--	--	--	--	--	--	--

※ 발행 : 남원시 / 편집 : 홍보전산과 ☎(063)620-6032

남원시 공고 제2015-1387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11월 일

남 원 시 장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구김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법하게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수급권자를 개별급여(생계.의료)수급자로 변경(안 제2조제2호)

나. 인용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3. 의견제출

○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12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원시장(참조:주민복지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제출사항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의견 제출할 곳 : 남원시장(참조 : 주민복지과장)

- 우편번호 : 55738

주 소 : 남원시 시청로 60(도통동) 남원시청 주민복지과

○ 의견 제출 방법 : 서면, 팩스(063-620-6711), 직접 방문, 컴퓨터 통신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남원시청 주민복지과(☎063-620-697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년월일: 2015. 11 .
제 출 자: 남 원 시 장
제안설명자: 주민복지과장

1. 개정이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에 적법하게 본 조
례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수급권자를 개별급여(생계, 의료)수급자로 변경(안 제2조제2호)
- 나. 인용한 상위법 개정사항 반영(안 제2조제5호 및 제6호)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나. 그 밖의 사항
 - 1) 입법예고
 - 기 간: 2015. 11. .~ 2015. 11. .(20일간)
 - 결 과:
 - 2) 비용추계서: 해당 없음
 - 3) 성별영향분석평가:

남원시 조례 제 호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등으로 인하여”를 “등으로”로, “주민에 대하여”를 “주민에게”로, “지원 함으로써”를 “지원하여”로 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를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 “10,000원”을 “1만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65세 이상 노인 세대”란을 “노인세대”란으로, “건강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우리시”를 “남원시(이하 “시”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시에”를 “제32조에 따라 시에”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모부자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을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제10조”를 “제15조”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남원순창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를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으로”로, “자로”를 “세대로”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노인세대

3. 한부모가족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세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장은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제6조 중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를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로 한다.

제7조 제1항 중 “대상”을 “지원대상”으로, “위해”를 “위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료”로 한다.

제8조 중 “지원대상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제9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지급대상자가”를 “지급대상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대상자가”를 “대상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상실한 때”를 “상실한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대상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4호 중 “방법에 의하여”를 “방법으로”로, “확인된 때”를 “확인된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를 “따른다”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노령,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주민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료와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사회복지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u>등으로</u> ----- ----- <u>주민에게</u> ----- ----- <u>지원하여</u> -----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생략)</p> <p>2. "저소득주민"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5조에 따른 수급권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국민건강보험료가 월 10,000원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p> <p>3. "65세 이상 노인세대"란 전세대원이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일 현재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으로 <u>우리시</u>에 거주하는 세대를 말한다.</p> <p>4. "장애인 세대"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p>	<p>제2조(정의) ----- ----- <u>뜻은</u> -----.</p> <p>1. (현행과 같음)</p> <p>2. ----- ----- <u>제7조제1항제1호</u> <u>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u> <u>급여 수급자</u>----- <u>1만원</u> ----- -----.</p> <p>3. "<u>노인세대</u>"란 ----- ----- <u>국민건강보험료</u> ----- ----- ----- <u>남원시(이하 "시"라 한다)</u>-----.</p> <p>4. ----- --<u>제32조에 따라 시에</u> -----</p>

우리시에 장애인으로 등록된 세대원이 있는 세대를 말한다.

5. "모·부자 세대"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6. "소년·소녀가장 세대"란 「아동복지법」 제10조에 따라 시장이 보호대상으로 결정한 세대를 말한다.

7. "조손세대"란 18세 이하 손자녀와 65세 이상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조손관계 세대를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국민건강보험료 지원대상은 남원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주민으로서 국민건강보험 남원순창지역 가입자이며 국민건강보험료부과금액 월 10,000원 미만 세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자로 한다.

1. 65세이상 노인세대
2. (생략)
3. 모·부자세대

-----.

5. "한부모가족"이란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라 남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6. -----
-----제15조-----
-----.

7. -----

----- 따른 -----
-----.

제3조(지원대상) -----
----- 국민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이 월 1만원 미만으로 -----

----- 세대로 -----.

1. 노인세대
2. (현행과 같음)
3. 한부모가족

4.·5. (생략)

제4조(대상세대 선정) 제3조의 대상세대 선정은 매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료 부과대상 세대 중에서 시장이 결정한다.

제5조(보험료 지원)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이 조례에 의한 지원 시기는 연중 지원하되 월별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에 따라 매월 말일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 지급한다.

제7조(조사) ① 시장은 대상의 결정 또는 지원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에게 보호대상자와 부양 의무자의 자산(소득·재산)상황, 건강상태 등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조사결과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

4.·5.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세대 선정)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는 매월 제3조에 해당하는 지원대상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통보하고, 시장은 선정 기준 해당 여부를 확인하여 지원대상세대를 결정한다.

제5조(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국민건강보험료를 지원한다.

제6조(지원시기 및 방법) 시장은 지원대상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를 연중 지원하되, 월별 국민건강보험료 -----
-----.

제7조(조사) ① ----- 지원대상
----- 위하여 ----

-----.

② ----- 국민건강보험료-----

서 제외한다.

제8조(자료관리) 시장은 지원대상자 자료를 관리대장 또는 전산 파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시장은 국민건강보험료 지급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중지한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한다.

1. 대상자가 사망 또는 관내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
2. 소득증가, 가족구성원 변동 등 지원대상 요건을 상실한 때
3. 대상자가 지원을 거부한 때
4.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때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반환할 사람이 기간 안에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

제8조(자료관리) ----- 지원대상 -----
-----.

제9조(지급중지와 환수) ① -----
----- 지급대상이 -----

-----.

1. 대상이 -----

2. -----
----- 상실한 경우
3. 대상이 지원을 거부한 경우
4. ----- 방법으로 -----
----- 확인된 경우

② 제1항-----

따른다.

**남원시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 **비용추계 대상 여부**

- 조례 제정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이 미미하여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에 해당하여 비용추계 대상이 아님.

※ 「남원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4항제1호

제3조(작성대상) ① 비용추계는 의무적 또는 임의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한다.

②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대상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간접적인 부담이나 파급효과를 포함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에 대해서도 필요한 경우 비용추계서를 첨부할 수 있다.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비용추계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단, 제외 대상인 경우에도 비용추계서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2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의견제출서

1. 의견제출 목록

2. 제출자

성명(명칭)

주 소

3. 의 견

4. 기 타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의견제출 및 처리)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5년 월 일

의견서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 화 :

남원시장 귀하

비 고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 할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를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원시 고시 제 2015 - 90호

지적측량기준점 성과 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관내 지적측량기준점 중 폐기기준점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가. 고시점수: 총65점 (지적도근점: 65점 폐기)

- 지적도근점 성과고시 : 14점

나. 고시내용: 별첨

다. 성과보관장소: 지적서고

2015. 11 . 16.

남 원 시 장

지적측량기준점 폐기 고시 내역

일련 번호	구 분	기준점명 및점번호	좌 표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성과보관 장 소	비고
			X	Y				
1	도근	19	212268.68	233832.20	왕정동 154-2	20120626	지적서고	
2	도근	28	212267.61	233980.46	왕정동 37-5	20081201	지적서고	
3	도근	47	212271.44	234017.24	왕정동 37-9	20081201	지적서고	
4	도근	49	212416.15	234064.85	왕정동 34-1	20081201	지적서고	
5	도근	116	212557.83	234845.81	동충동 483	20041220	지적서고	
6	도근	117	212503.33	234844.03	동충동 486-1	20120626	지적서고	
7	도근	118	212393.90	234838.18	동충동 486-1	20120626	지적서고	
8	도근	129	212242.83	234979.62	동충동 475	20061220	지적서고	
9	도근	130	212395.03	234992.07	동충동 486-1	20030101	지적서고	
10	도근	132	212560.33	234990.04	동충동 475	20061220	지적서고	
11	도근	135	212550.51	235124.20	동충동 11-16	20030101	지적서고	
12	도근	136	212501.24	235062.21	동충동 11-16	20061220	지적서고	
13	도근	138	212290.35	235172.93	죽향동 244	20030101	지적서고	
14	도근	139	212237.48	235086.95	죽향동 244	20030101	지적서고	
15	도근	307	215549.44	248353.08	운봉읍 동천리 586	20061220	지적서고	
16	도근	308	215573.82	248324.31	운봉읍 동천리 586	20120626	지적서고	
17	도근	355	215687.33	248470.70	운봉읍 동천리558-1	20081201	지적서고	
18	도근	370	218290.22	254487.40	인월면 서무리 696-17	20061220	지적서고	
19	도근	371	218279.29	254378.65	인월면 서무리 719-3	20030101	지적서고	
20	도근	372	218244.30	254251.32	인월면 서무리 719-3	20030101	지적서고	
21	도근	702	213694.94	236378.56	월락동 129-63	20030101	지적서고	
22	도근	1919	219508.45	254500.86	인월면 취암리 573-5	20030101	지적서고	
23	도근	1920	219600.55	254374.41	인월면 취암리 573-3	20030101	지적서고	
24	도근	2809	220649.63	237028.30	보절면 괴양리 895	20030101	지적서고	
25	도근	2847	222392.19	236776.98	보절면 진기리 1454	20030101	지적서고	
26	도근	2918	222323.08	236586.33	보절면 진기리 1529	20030101	지적서고	
27	도근	2919	222449.58	236666.93	보절면 진기리 1527	20030101	지적서고	
28	도근	3644	204363.55	217956.30	대강면 생암리 750	19980618	지적서고	
29	도근	4163	221593.28	256354.67	인월면 건지리 935	19980825	지적서고	
30	도근	4167	221484.40	256321.37	인월면 건지리 935	19980825	지적서고	
31	도근	4168	221519.16	256262.31	인월면 건지리 936	19980825	지적서고	
32	도근	4653	207824.10	220729.11	대강면 송대리 833	20030101	지적서고	

일련 번호	구 분	기준점명 및점번호	좌 표		소 재 지	측 량 년월일	성과보관 장 소	비고
			X	Y				
33	도근	4897	210969.25	228619.09	대산면 대곡리 1022	20030101	지적서고	
34	도근	6069	222212.26	233510.24	사매면 오신리 1025	20030501	지적서고	
35	도근	6291	224548.10	235551.01	덕과면 신양리 1018	20030501	지적서고	
36	도근	6292	224534.65	235665.72	보절면 황벌리 1242-1	20030501	지적서고	
37	도근	6607	207070.08	237864.24	주천면 배덕리 929	20030501	지적서고	
38	도근	9618	224512.31	243451.50	산동면 대상리 1074	20030101	지적서고	
39	도근	9619	224369.04	243455.69	산동면 대상리 1084-4	20030101	지적서고	
40	도근	9620	224097.74	243449.39	산동면 대상리 1074-15	20030101	지적서고	
41	도근	9636	223915.19	243040.72	산동면 대상리 1111	20030101	지적서고	
42	도근	9929	215609.73	234916.59	광치동 195-12	20030101	지적서고	
43	도근	10067	211578.94	237287.42	주천면 용담리 360	20050414	지적서고	
44	도근	10091	201684.22	224736.42	금지면 상귀리 산28	20050620	지적서고	
45	도근	10092	201687.87	224968.90	금지면 상귀리 산130	20050620	지적서고	
46	도근	10133	214795.85	254165.92	인월면 중군리 산75	20050831	지적서고	
47	도근	10268	210442.78	233154.50	송동면 장국리 390-3	20071001	지적서고	
48	도근	10523	217744.78	250098.00	운봉읍 신기리 23-9	20091008	지적서고	
49	도근	10524	217613.58	249931.60	운봉읍 신기리 20-16	20091008	지적서고	
50	도근	10525	217482.03	249765.02	운봉읍 신기리 18-9	20091008	지적서고	
51	도근	10526	217343.74	249606.50	운봉읍 신기리 17-9	20091008	지적서고	
52	도근	10527	217034.04	248831.25	운봉읍 신기리 521-1	20091008	지적서고	
53	도근	10566	219339.79	254622.53	인월면 취암리 381-5	20091104	지적서고	
54	도근	10650	212504.44	255958.69	산내면장항리 412-1	20100113	지적서고	
55	도근	11011	207080.27	224282.43	금지면 서매리 산244	20140813	지적서고	
56	도근	11012	207078.29	224170.26	금지면 서매리 산244	20140813	지적서고	
57	도근	20004	203953.23	232617.36	수지면 산정리 950-18	20090309	지적서고	
58	도근	20005	204017.70	232809.07	수지면 산정리 643-1	20090309	지적서고	
59	도근	20014	203946.21	234911.97	수지면 호곡리 92-63	20090309	지적서고	
60	도근	20054	216893.49	248969.30	운봉읍 신기리 7-30	20090309	지적서고	
61	도근	20068	216270.58	255260.33	인월면 중군리 89-7	20090309	지적서고	
62	도근	20093	221915.69	256221.04	인월면 건지리 418-1	20090309	지적서고	
63	도근	20111	220666.99	253003.83	아영면 봉대리 669	20090309	지적서고	
64	도근	20535	210394.51	230757.52	주생면 중동리 762-11	20110503	지적서고	
65	도근	20597	210431.31	222290.74	대강면 옥택리 570-2	20110503	지적서고	